

통 보

제 목 소방 안전 관리 개선
 소 관 부 서 ▲▲▲▲▲소
 내 용

▲▲▲▲▲소는 연구업무용 목적의 시료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능평가동 뒤쪽에 위치한 옥내저장소 점검 결과 [표1]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에서 정한 지정수량에 비해 허가받은 지정수량이 지나치게 작아 추후 초과하여 운영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성능평가동 뒷건물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유별	물질	수량(허가)	지정수량(법)	지정배수
4류 알코올류	메탄올	200L	400L	0.5
4류 알코올류	에틸알콜	200L	400L	0.5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휘발유	800L	200L	4.0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톨루엔	400L	200L	2.0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경유	200L	1000L	0.2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등유	400L	1000L	0.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는 연구업무 목적으로 고압가스 충전시설(DME/LPG)을 이용하고 있으나 고압가스 시설과 구분 없이 그 주변은 산과 쓰레기 적치장이 인접해있어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시 폭발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소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및 설비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위험물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배수를 확대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험물 저장 및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는 고압가스 충전기설 주변 법면 보수공사, 바닥정비, 인화성 물질 주변 배제 등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